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 운영규칙	규정번호	6-2-1
		제정일자	2004.04.30
		개정일자	2012.04.30
		개정번호	Ver.3 총페이지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양미래대학교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산학협력단 규정 등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산학협력처장으로 한다
2. 위원회에는 전임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15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

제4조(위원의 임명)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단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2. 산학협력단의 예. 결산에 관한 사항
3. 산학협력단의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4. 산학협력단의 연구원, 직원 임용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시설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6. 하부조직 운영에 에 관한 사항
7. 지적재산권 관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7조(위원회의 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의사 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회 소집의 특례)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0조(개정) 위원회 규칙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단장의 승인을 득하여 확정한다.

제11조(재정) 위원회의 재정은 산학협력단 경비로 충당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